

먼저 朴仁浩議員 外 13인이 提出한 서울 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案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反對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計數가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93名 中 贊成 69, 棄權 24名으로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關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關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의외할 수 있다”를 “의외하거나, 직접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기관은 의원이 직접 요구한 자료는 의원에게 제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원이나 사무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의원이나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 1992. 12. 24

발 의 자 : 박인호의원 외 13인

1. 수정이유

○개정안 제7조 1항 2항 3항 삭제

○개정안 제7조 4항 및 5항 등 자구수정

2. 수정주요골자

○개정안 제7조 1항 2항 3항 삭제

○개정안 제7조 4항 내용 중 “의원”부분 삭제

○개정안 제7조 5항 내용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

○議長 金瓌會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로써 35日間の 第10回 定期會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定期會 中 行政事務監査, 市政質問, 豫算案審査, 決算承認 및 議案審査 등 議事日程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음은 同僚議員 여러분의 열의에 淸 議政活動의 結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議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地方自治의 定着을 이루고자 努力한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部分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來年에도 서울市議會의 發展과 地方自治制의 定着을 위하여 우리 모두 最善의 努力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1992年 壬申年이 지나가고 1993年 癸酉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다가오는 1993年에도 건강에 留意하시고 家庭에 平安과 행복이 充滿하기를 祈願